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行政財務委員會所管)

1992. 6. 22.

행정재무위원회

1. 심 사 결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2년 7월 15일

다. 상정일자 : 1992년 7월 21일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수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金榮俊)

가. 제안이유

- '9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지방자치법 제35조
 -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나. 주요골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무위원회소관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관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액	추가경정예산액	비 고
일반행정비	33,858,491	31,487,903	2,370,588	
기획행정비	14,913,718	13,893,391	1,020,327	
내무행정비	17,989,025	16,696,927	1,292,098	
재무행정비	804,443	755,054	49,389	
복지사업비	151,305	142,531	8,774	총무국소관, 생활체육과 예산임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專門委員: 金熙中)

첫째, 방법대원(170명) 인건비가 6억 9,530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기획행정비중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부재원으로 보조를 받으려 하였으나, 부결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방법대원에 대하여 임면과 보수지급은 영등포구청에서 관장하고, 감독등 일반적 사항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관장하는등 동질성 업무가 2원화 되어 업무추진의 효율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성질상 경찰서로 일원화하여 국비로 지원 하도록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민원 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대민봉사를 위한 업무추진상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으나, 산출근거를 보면 1개업체의 전적금액만으로 산출한 것으로 다소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셋째, 청소 기능직공무원(운전원, 정비공)의 급식비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청소원 및 기타 유사직종과의 균형유지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서무관리중 수용비수수료로 1,4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나 이중 총별안내판 8개를 4개로 줄여 180만원만 계상하고, 부서별 표지판 80개를 20개로 줄여서 50만원만 계상하고, 프랑카드 제작 5회를 2회로 줄여서 12만원을 계상하여 총 348만원을 줄여 1,0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할 수 있으나, 예산절약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면에서 직영이나 위탁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서무관리중 자산취득비에서 기타장비로 증액 계상한 780,000원은 산출근거가 불확실하며, 시설비중 주차단속원 사무실 설치비로 증액계상한 3,000만원은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보며 이 금액은 설계가격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2,920만원(구협의회 연500만원, 동협의회 연 2,4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 추경편성 지침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토록 하게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3,920만원(구협의회 1,500만원, 동협의회 2,420만원)을 증액계상 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단체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 한다고 봅니다.

4.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적의원 11명

- 출 석 11명
- 찬 성 11명
- 반 대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 7월 21일 행정재무위원 임병섭위원

나. 수정이유

계약서등 관계 증빙서류 미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없어 예결특위에서 삭감 조정할 것을 위임하려는 것임

다. 수정 주요골자

총무국 소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시설비 중

구민회관 건립비 추가분 (9억 4천 7백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기타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修正(案)

1. 일반회계(세출)

1) 총무국 소관

장				영등포구청장 제출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이 유
관	항	세 항	목			
내 무 행정비	내 무 행 정	서 무 관 리	시설비	9억4천7백만원		계약서등 관계 증빙서류 미 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없어 예결특위에서 삭감 조 정할 것을 위임하려는 것임

2) 기타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所管)

1992. 7. 24.
운 영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2년 7월 15일

다. 상정일자 : 1992년 7월 23일

〈제12회 임시회(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김열회)

가. 제안이유

- '9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지방자치법 제35조
 -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나. 주요골자

- '9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추경)
합 계	992,588	892,598	162,990
의 회 운 영 비	992,588	829,598	162,990

3. 전문위원 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의회개원 1년이 경과되면서 1991년도 의회 및 사무국운영비 총예산액은 10억 8,081만 9,000 원이었으며 1992년도 예산액은 9억 9,258만 8,000원(추경포함)으로 1991년보다 8,823만 1,000 원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이 증액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8억 2,959만 8,000원보다 1억 6,299만원이 증가한 9억 9,258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상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승인 요청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되었지만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절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제고시키고 특히,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구청의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직원(기능직)과 같은 수준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이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적의원 9명

- 출 석 9명
- 찬 성 9명
- 반 대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21일 행정재무위원 임병섭 위원

나. 수정이유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조키 위한 특별판공비중 상임위원회 운영경비로 계상된 특별판공비 전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함

다. 수정 주요골자

의회소관 예산중 (예산과목 : 의회운영비, 의회운영,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상임위원회 운영을 보조키 위하여 계상된 특별판공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하고,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修正(案)

1. 일반회계 (세출)

1) 의회 소관

(단위: 천원)

장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수정안		수정 내역
관	항	세항	목		감액	증액	
의회 운영비	의회 운영	의정 활동	특별 판공비	29,000	20,000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위운영 활동비 2, 000만원 전액삭감

2) 기타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市民保社委員會所管)

1992. 7. 24.
 시민보사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2년 7월 15일

다. 상정일자 : 1992년 7월 21, 24일

〈제12회 임시회 (휴회중) 제1, 2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 수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이창희

보건소장 문인홍)

가. 제안이유

- '9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지방자치법 제35조
 -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나. 주요골자

- '92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추경)
합 계	17,674,865	16,442,011	△1,232,854
복지사업비	5,772,813	5,168,440	△604,373
보건위생비	1,796,736	1,745,329	△51,407
환경녹지비	10,105,316	9,528,242	△577,074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첫째, 거택보호자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비로 782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가구당 30원 지원에서 연탄1장당 30원으로 지원 변경되어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경노우대 승차권에 85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 거택보호자 — 470세대 614명
- 경노우대 승차권자 — 18,040명

둘째,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 되었으나 서울시 보조금 감소와 인건비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특별 교부금지원 비율을 상향토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보건소 일반경상비 및 운영비 등으로 3,462만 1,000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된 것을 보면 다소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보며, 경상적 경비등은 가급적 축소하여야 하며 본예산 편성시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므로써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넷째,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3억 5,851만 2,000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92. 11. 1부터는 쓰레기를 김포 해안 매립지로 반출하는데 따른 부담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 규약 제14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시에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4.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재적의원 8명

- 출석 8명
- 찬성 7명
- 반대 1명)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24일 시민보사위원 최준화 위원

나. 수정이유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돔 설치가 시급히 요망됨에 따라, 복지사업비중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돔 설치비 재원으로 계상토록 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시민국 소관 예산중 (예산과목 : 복지사업비, 생활보호, 저소득층보호, 시설비) 당초 계상된 5억2,200만원중 3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대림3동 쓰레기 집하장 돔 설치비로 계상토록 하고, 저소득층 노임 취로비는 시 교부금 배정시 우선 충당하고 교부금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修正(案)

1. 일반회계 (세출)

1) 시민국, 보건소 소관

(단위: 천원)

장				지방자치 단체제출 예산액	수정안		수정 이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목		감액	증액	
복지 사업비	생활 보호	저소득 층보호	시설비	522,000	350,000		저소득층 귀로임금 일부를 삭감하여, 대 림3동 쓰레기집하장 덤설치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함.

2) 기타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都市建設委員會所管)

1992. 7. 24.
도시건설위원회

1.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1992년 7월 13일

나. 회부일자 : 1992년 7월 15일

다. 상정일자

제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92. 7. 23) 상정 의결

3.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가. 세출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92추경예산액	'92당초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51000) 건설사업비	16,145,897	15,778,610	367,287	2.3
(52000) 치수하수사업비	1,048,106	1,010,960	37,146	3.6
합 계	17,194,003	16,789,570	404,433	2.4

4.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도시건설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167억 8,957만 400원에 증액 계상한 171억 9,400만 300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나.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도시건설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4억 443만 3,000원의 증액내역은 1992년도 당초예산중 건설관리비 148억 8,913만원에 부족분 1억 9,180만원과, 주택사업비 3억 3,820만 9,000원에 부족분 1억 6,833만 3,000원이며 또, 도시계획비 5억 5,127만 1,000원에 부족분 715만 4,000원으로서 부족분 합계 3,672만 8,700원입니다.

또, 치수사업비 10억 1,096만원에 부족분 3,714만 5,000원으로 도시건설사업비와 치수하수사업비를 합하면 171억 9,400만 300원으로 부족분 4억 4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검 토 보 고

추경에 계상된 도시건설 분야를 크게 분류하면 건설사업비와 치수하수사업비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건설관리와 주택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세분하게 되며 분야별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관리분야에 있어서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2,3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는 1992년 3월 시장방침에 의거 노점상 단속, 무허가건물 단속, 야간업소 단속등 단속업무에 관계한 공무원(기능직)에 대하여 특별히 지급토록 조치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액에 편성할 수 없었던 예산으로 추경에 승인하므로 직원들의 업무에 충실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택사업에 있어서 배상금에 대하여 검토한바 아파트 입주권 사건으로 발생한 추가소요금 1억 6,257만 2,500원으로 이는 1989년 당구청 주택과 주택계장으로 있던 박 사원의 사기사건(당시 A.P.T입주사기) 소송에 따른 배상금의 추가 금액입니다.

이에 따르는 배상은 일차적으로 처분행정청인 구청에서 하되, 감독청인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상토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셋째, 지역교통과 분야입니다.

수용비수수료를 검토한 바 산출기초 내용중에 주차단속반 비품수리비 내용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16대 있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2년이 되어서 노후로 고장이 자주 생기므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대당 30,000원 수리비가 예상되므로 $30,000\text{원} \times 16\text{대} \times 6\text{월} = 2,880,000\text{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수리비면 카메라 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신품을 구입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3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지않고 신품을 구입하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이라고 생각되며, 기타 6가지 사항도 추가경정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초 본예산에 책정하여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치수하수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의 수용비수수료는 많지 않은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관내 수문과 펌프장이 모두 21개소와 8개소 입니다. 장마에 대비한 점검이 수시로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설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검을 위한 수수료는 추정으로 하지않고 본예산에 책정하여 앞으로 사용시 고장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가. 수정안의 요지

- (1) 제안일자 : '92. 7. 23
- (2) 제안자 : 이용주 의원
- (3) 수정이유

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 배상은 감독청인 서울시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며, 우리구 예산으로 배상을 하면 주민에게 담세율을 가중시키므로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택사업(51201) 배상금을 삭감함.

(4) 수정 주요골자

일반회계 건설사업비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택사업 (51201) 1억 6,257만 2,5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기타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생략

9. 수정안 대비표

수정안대비표 (도시건설분야)
일반회계(세출)

(단위:천원)

원			안			수정안		
장			'92	'92	비고	'92	'92	비고
관	항	세항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안	증(-)감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안	증(-)감
51000 건설사업비			16,145,897	15,778,610	367,287	15,983,324	15,778,610	204,714
	51200 주택사업		506,542	338,209	168,333	343,969	338,209	5,760
		51201 주택사업	447,242	284,669	162,573	284,669	284,669	△162,573

※ 주택과 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 배상금 1억 6,257만 2,500원을 삭감